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허성무 · 정태호 · 장철민
이언주 · 김병주 · 강경숙
오세희 · 최형두 · 박희승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압가스의 제조로 보아 제조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와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군부대 안에 군사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는 수소의 제조·저장·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이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류시설과 수소시설 사이에 군사목적 특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용 수소시설은 보안상 외부기관에 설계도서·배치도·저장

량 등의 정보 제출과 검사인력의 반복적인 출입이 곤란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시 선임 의무가 순환보직 중심의 군 인사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훈련장·시험장 등으로 반복 전개하여 충전하는 군의 운용방식을 규율할 근거가 없어 수소 기반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군용 수소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서

“군용 수소시설”이란 군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시행자(이하 “군부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소에 한한다)의 제조·충전 또는 저장시설을 의미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수소를 판매하거나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군부대의 장 등이 군용 수소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약하여야 한다.

③ 군부대의 장 등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약한 군용 수소시설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6
조의2에도 불구하고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동식 군용 수소시설에 대한 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검사와 전개장소에 대한 안전확인으로 검사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군부대의 장 등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군용 수소시설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⑦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약본 또는 식별정보를 제외한 도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협의의 대상시설·절차 및 제출서류, 합동검사의 방법·절차 및 보안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통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구역(이하 “지정운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운용구역은 군부대의 주둔지, 훈련장, 시험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②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하고 검사를 마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은 지정운용구역에서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 ③ 지정운용구역에서의 안전거리, 차량의 고정, 긴급차단, 소방대응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다.
- ④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긴급히 충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운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부대의 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사용하여 수소를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용 수소시설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군용 수소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서 “군용 수소시설”이란 군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이하 “군부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소에 한한다)의 제조·충전 또는 저장시설을 의미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수소를 판매하거나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u> <u>② 군부대의 장 등이 군용 수소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군부대의 장 등이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u>

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한 군용 수소시설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6조의2에도 불구하고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동식 군용 수소시설에 대한 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검사와 전개장소에 대한 안전확인으로 검사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군부대의 장 등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군용 수소시설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⑦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신 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약본 또는 식별정보를 제외한 도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협의의 대상시설·절차 및 제출서류, 합동검사의 방법·절차 및 보안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군용 이동식 수소충전 시설의 운용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통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구역(이하 “지정운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운용구역은 군부대의 주둔지, 훈련장, 시험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하고

검사를 마친 군용 이동식 수소 충전시설은 지정운용구역에서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③ 지정운용구역에서의 안전거리, 차량의 고정, 긴급차단, 소방대응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긴급히 충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운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부대의 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사용하여 수소를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